의안번호	제 317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월 일 (제 278 회)

충청북도 도민감사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박재국의원 외 6인
발의연월일	2009년 3월 6 일

충청북도 도민감사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17

발의연월일 : 2009년 3월 6일
발 의 자 : 연만흠 ·강태원 ·김환동
이필용 ·장주식 ·조영재
의원(7인)

개정이유

도민 감사관의 기능을 변경 및 추가하고, 도민 감사관 수를 확대하는 등 도민 감사관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 조례의 제명을 알기쉽고 간결하게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로 함.

나. 도민감사관의 목적 변경(안 제1조)

- 제1조를 아래와 같이 함.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이 감사에 참여하여 열린 감사를 실현하고 행정감사 수행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충청북도 도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도민 감사관의 기능 변경 및 추가(안 제2조)

- 제2조를 아래와 같이 함.
- 제2조(기능) 충청북도 도민감사관(이하 “도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의견 및 방향을 제시하거나 위법사항 등을 제보할 수 있다.
  1.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각종 감사
  2. 충청북도의회가 요청한 감사
  3. 위법·부당사항 및 불편·불만사항 제보
  4. 공무원관련 비위 품위손상행위 제보

라. 도민 감사관 위촉인원 확대 및 자격요건 변경(안 제3조)

- 제3조를 아래와 같이 함.
- 제3조(구성) ① 도민감사관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명예직으로 한다.
  ②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충청북도민 중에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공공기관 감사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변호사·회계사·세무사·기술사·건축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
  3. 사회적 신망이 높고 감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도민 감사관 감사 참여내용 변경(안 제5조)

- 제5조를 아래와 같이 함.
- 제5조(감사 참여)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도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도민감사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바.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체계 정비

1) 각 항을 나타내는 ①, ② 등의 기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은 띄어쓰기로 함.

2) “제○조의 규정에 의한/의하여”를 “제○조의 규정에 따른/따라”로 함.

- “~에 의한/의하여”는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으로 “~에 따른/따라”로 바꾸고, “제○조의 규정”에서 ‘의 규정’은 법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생략함.

3) 그 밖에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정비기준에 맞추어 수정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 : 별첨

나. 관련부서 협의 : 의견없음(감사관실)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충청북도 도민감사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이 감사에 참여하여 열린 감사를 실현하고 행정감사 수행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충청북도 도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충청북도 도민감사관(이하 “도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의견 및 방향을 제시하거나 위법사항 등을 제보할 수 있다.

1.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각종 감사
2. 충청북도의회가 요청한 감사
3. 위법·부당사항 및 불편·불만사항 제보
4. 공무원관련 비위 품위손상행위 제보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 도민감사관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명예직으로 한다

②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충청북도민 중에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공공기관 감사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변호사·회계사·세무사·기술사·건축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
3. 사회적 신망이 높고 감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제1항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감사 참여)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도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도민감사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중 “제6조(수당)”을 “제7조(수당)”으로 한다.

제7조 중 “제7조(비밀누설금지)”를 “제6조(비밀누설 금지)”로 한다.

제8조 중 “운영 및 구성”을 “운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북도 도민감사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지위에서 도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민감사관(이하 "도민감사관"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이 감사에 참여하여 열린 감사를 실현하고 행정감사 수행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충청북도 도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도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의견 및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제2조(기능) **충청북도 도민감사관(이하 "도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의견 및 방향을 제시하거나 위법사항 등을 제보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의 주민의 감사청구 사항	**1.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각종 감사**
2. 집단 민원발생 사항	**2. 충청북도의회가 요청한 감사**
3. 도의회가 지정하여 감사를 요청한 사항	**3. 위법·부당사항 및 불편·불만사항 제보**
	4. 공무원관련 비위 품위손상행위 제보

제3조(구성 및 자격) ①도민감사관은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비상근명예직으로 위촉한다.	**제3조(구성)** ① 도민감사관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명예직으로 한다.**
②도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민 중에서 충청북도 감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충청북도민 중에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행정기관에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1. 공공기관 감사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변호사·회계사·세무사·기술사·건축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	2. 변호사·회계사·세무사·기술사·건축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
3. 사회적 신망이 높고 감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사회적 신망이 높고 감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도민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다.	**(삭제)**
제4조(임기 등) ①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임기 등) ①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도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②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본인이 도민감사관 해촉을 희망할 때	1. 본인이 도민감사관 해촉을 희망할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	2.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

행하기 곤란한 경우	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충청북도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충청북도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5. 기타 도민감사관으로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도정에 손해를 입힌 경우	5. 기타 도민감사관으로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도정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5조(감사실시) 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하여야 하며, 도민감사관의 감사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 참여)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도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도민감사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도민감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도민감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금지) 도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비밀누설 금지)** 도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도민감사관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도민감사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연서)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

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은 "감사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본다.